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7. 14 선고 2022가단10630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2. 6. 23.

판 결 선 고 2022. 7. 14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 상속지분에 관하여 2020. 8. 11.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이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 상속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1. 11. 29. 접수 제1176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(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)

가.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32940 양수금사건의 지급명령에 따라 2019. 6. 24. 기준으로 38,565,103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.

나. D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20. 8. 11. 사망하였는데, 그 공동상속인인 아들 C(법정상속지분 2/5)과 배우자 피고(법정상속지분 3/5)는 2020. 8. 11.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, 2021. 11. 29.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.

다. 위 협의분할 당시 C은 위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위 양수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, 채무초과 상태의 C이 그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위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피고에게 처분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.

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이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.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. 그런데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

3. 결론

C과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 2/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2/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.

판사 최규현

[별 지 목 록]

1층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의정부시 [] [] 아파트 [] 동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의정부시 []

철근콘크리트조 벽식조 슬래브지붕 13층 아파트

1층 833.36 m²2층 779.12 m²3층 779.12m²4층 779.12m²5층 779.12 m²5층 779.12 m²6층 779.12 m²7층 779.12 m²8층 779.12 m²9층 779.12 m²10층 779.12 m²11층 694.24 m²12층 694.24 m²13층 694.24 m²지층 786.75 m²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6층 [] 호

철근콘크리트벽식조 64.68m²

